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성실 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등을 추가하고, 징계의결 시 표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소극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른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4. ~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극행정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7.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행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행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10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8. 제10호가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10호가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참작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상참작) ① (생 략)	제3조(정상참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②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소극행정</u>
<u>11. ~ 13. (생 략)</u>	<u>12. ~ 14.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u>
<u><신 설></u>	<u>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u>
<u><신 설></u>	<u>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u>
<u><신 설></u>	<u>17.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